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『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2019. 3. 4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專 門 委 員

『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　　과

의안 제85호로 2019년 2월 1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청소년 상담 및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,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, 학교폭력예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게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시설 현황 및 주요사업

○ 시설명칭: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(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, 학교폭력예방센터 포함)

○ 위　　치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22길 36(영등포본동) 지하1층, 지상2~3층

○ 규　　모: 면적 703.36㎡, 정원 17명

○ 주요시설: 상담대기실, 심리검사실, 놀이치료실, 사무실 등

○ 주요사업

구분	주요사업
청소년상담복지센터	청소년 및 부모 상담(심리검사, 놀이치료)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·운영 사업 청소년 긴급 구조 전화 운영
청소년동반자사업	찾아가는 청소년 상담, 위기청소년 사례관리
학교폭력예방센터	학교폭력 피해자·가해자 상담 심리검사,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
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	학교 밖 청소년(학업중단 등) 지원 (취업, 검정고시, 문화여가, 건강지원 등) 청소년자율공간(영등포본동) 운영

나. 위탁운영 개요

○ 위탁기간: 3년

○ 위탁사무

-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- 학교폭력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-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-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○ 소요예산(2019년): 725,477천원

(단위:천원)

구분	운영예산	비고
계	725,477	
청소년상담복지센터	362,861	국・시・구비
청소년동반자사업	127,579	시비
학교폭력예방센터	59,447	구비
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	175,590	국・시・구비

다. 추진 일정

○ 2019년 2월 : 구의회 동의

○ 2019년 3월 : 일상감사 의뢰

○ 2019년 3월 :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

○ 2019년 4월 :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

○ 2019년 4월 : 위탁체 결정 및 협약체결(위탁기간: 3년)

4. 관련 근거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
○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42조의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

○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 제10조(지원센터의 위탁)

○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」 제14조(학교폭력예방센터 설치·운영)

○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

5. 검토의견

○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「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」은 청소년 상담 및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,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, 학교폭력예방센터를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법인(단체)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.

○ 상기 시설은 영등포구 도영로22길 36(영등포본동) 지하1층, 지상 2~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703,36㎡, 정원 17명인 청소년 복지시설로, 청소년 및 부모 상담, 위기청소년 사례관리,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,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.

○ 청소년 상담, 위기 청소년 관리, 학교폭력 예방,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분야 전반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현장경험 등 전문적인 운영 노하우가 요구되어 지는 바,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므로,

○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2 청소년복지지원법

제42조의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3. 5. 28.]

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

제10조(지원센터의 위탁)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·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

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

제14조(학교폭력예방센터 설치 · 운영)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 실태조사, 심리검사, 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학교폭력예방센터(이하 “예방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예방센터는 기존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과 병행하여 운영하거나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예방센터의 운영을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민간위탁"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"수탁기관"이라 함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<개정 2013.12.12>

②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을 한다. <개정 2013.12.12>

③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